

## 10.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

\*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은 기술보급부 친환경기술과 (지방농촌지도관 이수영·지방농촌지도사 이준배 031-229-5861,3 )입니다.

### 가. 사업 현황

구분	사업명	사업량 (개소)	개소당 사업비 (백만원)	계	국비	도비	사군비	대상시군
계	2종	116	-	298	99	30	169	-
국비	품목별농업인 연구회활동지원	66	3	198	99	-	99	수원 2, 성남, 용인 5, 안산 2, 평택 5, 시흥 2, 화성 2, 광주 2, 김포 2, 이천 2, 안성 6, 오산, 여주 5, 양평 4, 고양 2, 남양주 3, 의정부, 파주 2, 양주 5, 포천 4, 동두천, 가평 2, 연천 5
도비	품목별연구회 학습활동지원	50	2	100	-	30	70	수원, 성남, 부천, 용인 3, 안산, 평택 3, 시흥, 화성, 광주, 김포 2, 이천 2, 안성 4, 오산, 의왕, 여주 3, 양평 4, 고양, 남양주 2, 의정부, 파주 2, 양주 4, 포천 2, 동두천, 가평 2, 연천 4

## 나. 사업 추진 요령

### □ 목 적

- 지역별 품목연구회 대상으로 개별농가의 취약한 경쟁력 향상과 집단지도를 통한 활동의 조직화, 생산 및 가공, 경영·마케팅 교육 등 학습 활동 촉진으로 특성화된 강소농(強小農) 조직체 육성
- 품목별 새 기술 영농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

### □ 추진방향

- 지역 농업특성에 맞게 연구회 모임 등 생산자 조직 지도체제를 구축
- 개별 생산 활동, 판매 보다는 조직화, 공동브랜드 개발·사용 등을 통해 결집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단체 활동 지원
  - ※ 상급단위 연구회행사 참여에 따른 단순 여비지원 금지(국·도비)
  - ※ 국비(품목별농업인연구회 활동지원)는 개소당 1개 연구회에 지원
- 지역내 개별 생산자 조직과 연계하여 생산과 경영, 유통, 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정보 교류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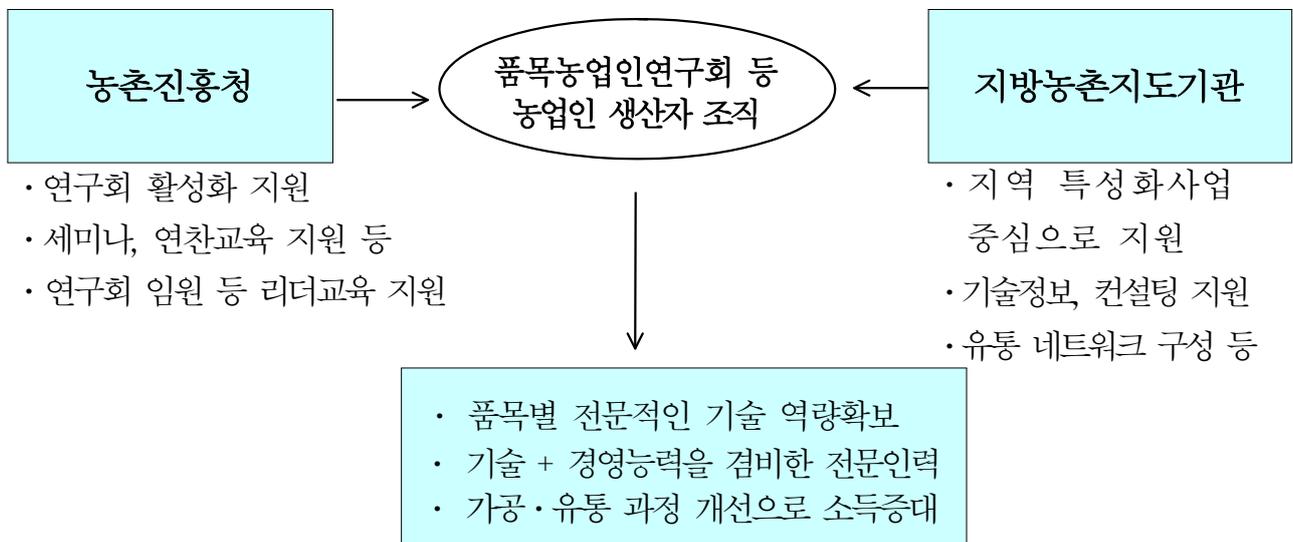
### □ 근거법령

- 농촌진흥법 제2조 2항·3항,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(훈령 제691호)

### □ 사업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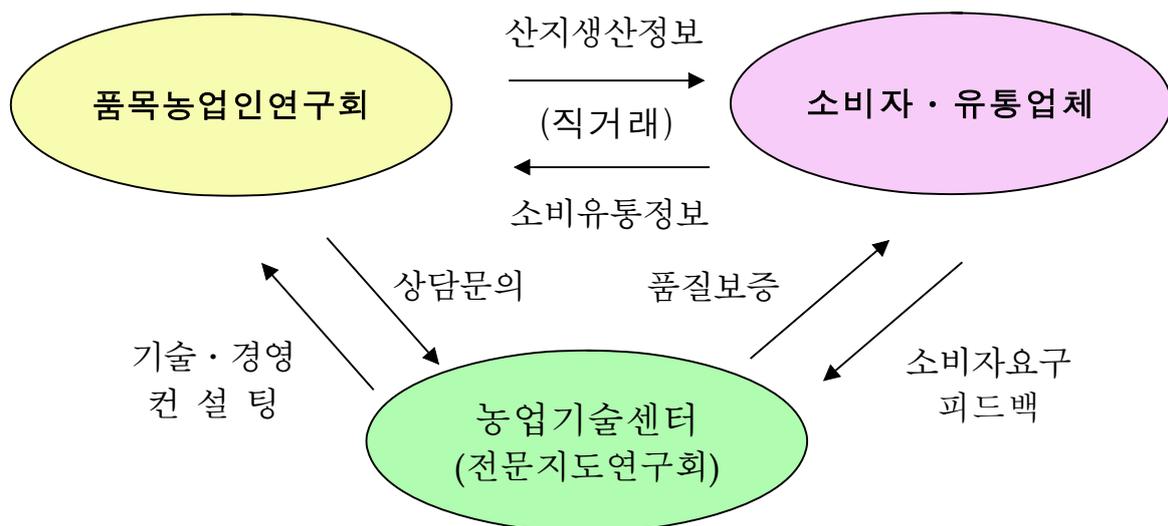
- 연구회 활동이 활발하고 교육, 학습, 영농상 문제해결 의욕이 강한 모임
- 일정 규모 이상의 정예회원 확보하여 자율 모임을 운영, 기술의 향상과 협동경영에 관심이 많은 모임
- 연구회에서 발전한 농업법인 등 경영체의 성장단계별 지원

### □ 육성체계



## □ 사업 내용

-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체계 확립 : 시군, 도·광역단위 자율 육성
  - 시군단위조직
    - 지역내 대표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15~20회 조직운영
    - 조직 규모(회원수)는 품목 및 지역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
  - 도 및 광역단위 조직
    - 품목농가가 적은 품목은 3~4개 시군 또는 도단위 광역조직으로 운영
    - 농업기술원 및 소속 특화작목시험장의 연구·지도공무원과 연계강화
- 자생력 향상을 위한 회원중심의 자율적인 조직 운영
  - 연구모임 회칙 등의 제정으로 조직 운영의 체계화
  - 연구모임의 자생력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조성 활용
- 농산물 생산·유통·마케팅 등에 관한 기술정보 지원 체계 확립



- 연구회와 전문지도연구회, 소비자 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
  - 전문지도연구회원 중심 연구모임과 소비자 연계 활동 강화
  -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사업 활성화로 생산물 제값받기 실현
  - 소비자 및 유통업체와 연계 강화: 도, 시군당 1개회 이상 시범운영 후 확산
- 효율적 운영을 위한 농업인 생산조직 지원 강화
  - 새 기술 시범, 경영컨설팅 등 우선 지원
  - 연구기관의 신기술투입 접목연구와 연계 연구과제에 적극 참여 권장
  - 새기술 시범사업, 지역특성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 지원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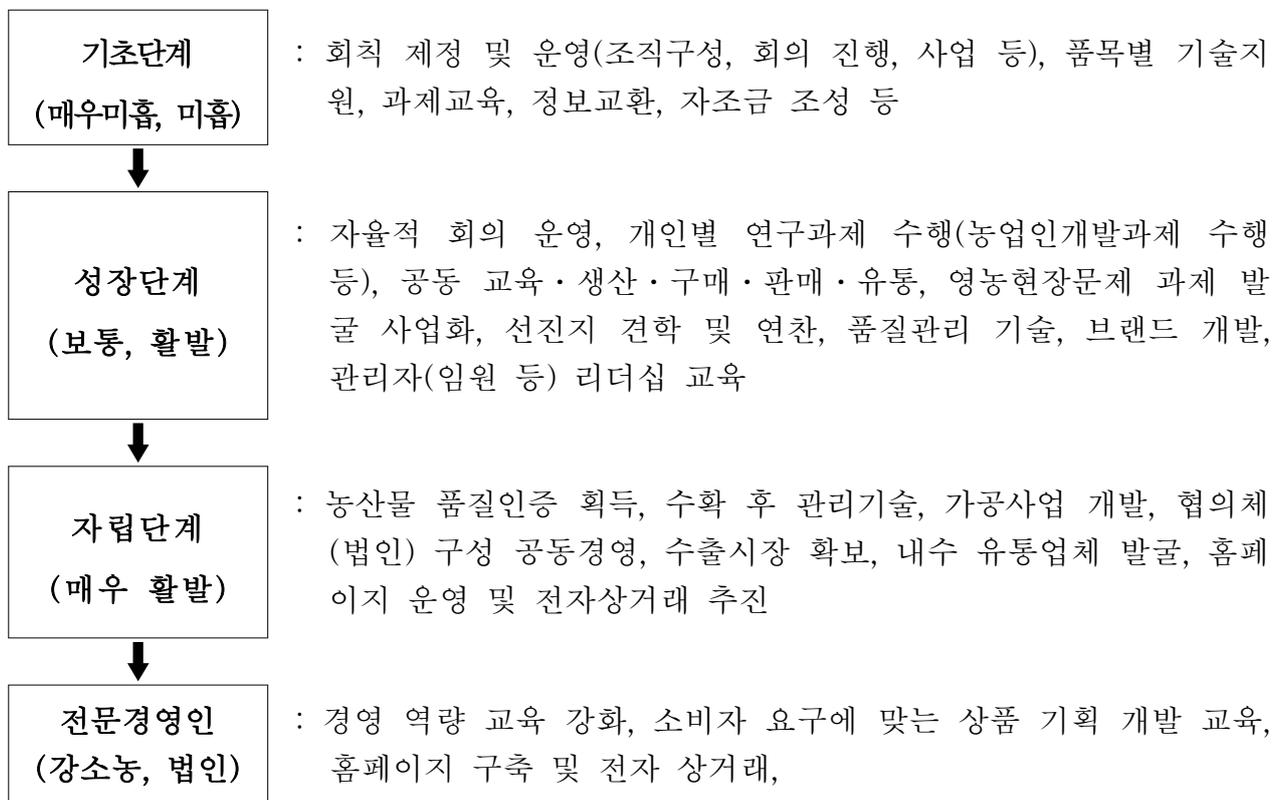
○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 전개 유도

- 분기별 1회 이상 자기주도 학습 : 개인연구과제 발표 등 기술정보 교환
- 지식정보 습득을 위한 농업관련전문지 및 서적 구입 활용
- 농촌지도기관의 각종 전문교육을 연구회 중심으로 운영
- 전문지도연구회와 합동연찬회, 유통현장교육 연 1회 이상 개최

○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임원 과제교육

- 기 간 : 1~2일간(상반기 중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기, 기간 조정)
- 주요내용 : 조직운영 기법 및 자기학습의 효율적 방안 등

○ 품목농업인연구회 수준별, 성장단계별 지도체계 확립



○ 생산 농산물 상품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지도

- 포장재 디자인 개발 등 농산물 규격화·표준화 생산 활동 지도
-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체 『브랜드개발』 연구 활용, 품목농업인연구회 **엠블럼 활용 등**
- 친환경 품질인증, 농축산물이력정보체계 도입 활용 등

○ 객관적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

- 연구모임의 체계적 평가활동 평가지표개발 결과('08)의 적용
- 연구모임의 자체 경영분석 등을 통한 체계적인 경영마인드 확산
  - 연말 총회 시 시산표 작성 등 재무 분석을 통한 지속적 경영
  - 경영 컨설팅을 통한 자체 경영분석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 확보

□ 행정사항

○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 및 지도 내용 결과 보고(11. 10 한)

- 연구회별 <참고 1> 품목농업인연구회 활동평가지표(예시)를 참조하여 아래 양식을(excel로 작성) 제출하시기 바람

1) 조직유형

지역	계(개회)	읍면단위	시군단위	광역단위	도단위

※ 광역단위 : 2~3개 시군 연합연구모임

2) 연구회 육성 현황

품목	연구회명	조직수	회원수	소속시군(조직/회원)
채소	고 추			
	배 추			

※ 광역단위 : 2~3개 시군 연합연구모임

3) 활동실적

지역	연구회수	회원수	교육·연찬실적		활동수준(개회)			브랜드 활용(개회)	법인설립 연구회수	자조금액(백만원)	전 자상거래거래(개회)
			횟수(회)	인원(명)	기초	발전	자립				
시군											

4) 법인조직 현황

지역	연구회명 (법인전단계)	법인명	규 모		설립 연도	판매유형 (아래 예시)	구 분
			인 원	자산(억원)			
000시 000군		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자상거래</li> <li>· 도매시장, 농협계약</li> <li>· 대형유통업체 등</li> </ul> 관련활동 및 목적 기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영농조합법인</li> <li>· 농업회사법인</li> </ul> 구분

5) 지역별 특수사업 추진

소속시군	연구회명	사 업 명	주 요 내 용
00시군			

6) 주요 활동 사진 : 시군별 2매 내외

7) 문제점 및 건의사항

○

<참고 1>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 평가표(예시)

1. 연구회명 :
2. 평가표

평가요소 및 배점	평가기준 및 배점	현황	평가지표	점수	비고	
활동기반(20)	회원 구성(5)		시군단위 : 5점			
			읍면단위 : 3점			
	연구회 사업계획 수립 유무(4)		있음 : 4점			
			없음: 0점			
			5년, 40명이상 : 3점			
	회원규모 및 활동연한(3)		3~5년, 40명이상 : 2점			
			3년 미만, 기타 : 1점			
			500만원 이상 : 4점			
	지방비 지원(4점)		3백만원 이하 : 3점			
			2백만원 미만 : 1점			
		1백만원 이상 : 4점				
자조금 조성(4점) *회원1인기준		1백만원 미만 : 2점				
		없음 : 0점				
		4회 이상 : 10점				
회원활동 (30점)	교육 및 연찬 실적(10점)		3회 : 7점			
			1~2회: 5점			
			없음 : 0점			
			4회 이상 : 10점			
	과제 발표 수(10점)		3회 : 5점			
			1~2회: 3점			
			없음 : 0점			
			4회 이상 : 10점			
	농산물 소비촉진 관측·홍보활동(10점)		3회 : 7점			
			1~2회: 5점			
		없음 : 0점				
		있음: 10점				
시장 교섭력 (50점)	브랜드 개발(10점)		개발 중 : 5점			
			없음 : 0점			
			인증: 10점			
	농산물 품질 인증 여부(10점)		없음 : 0점			
			80%이상 : 30점			
	공동구매 및 판매희용참여(30점)		60~80% : 24점			
			40~60% : 18점			
			20~40% : 12점			
			20%미만 : 6점			
		합계 : 100점				

※ 자 료 : 품목별농업인조직체 평가체계 및 학습단체 연계방안('08 용역연구결과 1안, 2안 조합)

※ 평가 기준 : 60점 미만(기초단계), 60~75점미만(발전단계), 75 이상(자립단계)

→ 앞 페이지 행정사항 2) 활동실적 중 '활동 수준' 분류에 활용

## 다.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농촌진흥청 훈령 제 691 호

###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#### 1. 제정이유

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모임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사업을 농촌지도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명확히 정하려는 것임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임을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하고 승인을 받아 활동함(안 제2조)
- 나. 연구모임의 명칭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품목별 시군단위 연구회, 품목별 연합회, 품목별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함(안 제4조)
- 다. 연구모임 활동은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 배양 및 시장교섭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추진 등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함(안 제3조)
- 라. 연구모임의 체계적인 조직, 운영 등을 위하여 육성위원회를 두며, 전담부서 등을 지정하여 운영함(안 제6조, 제11조)

#### 3. 관계법령 : 농촌진흥법 제2조

농촌진흥청 훈령 제 691 호

농촌지도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2005. 7. 18  
농촌진흥청장

##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농촌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”(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)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인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농촌지도기관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.

**제3조(명칭)** ① 시군단위 연구모임은 “00시구(군) 00연구회”라 한다.

②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없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“00도 00연구회”라 한다.

③ 시군단위 연계조직이 있는 도단위 연구모임은 “ 00도00연구연합회”라 한다.

④ 중앙단위 연합모임은 “한국00연구중앙연합회” 라 한다.

**제4조(연구모임의 조직)** ① 연구모임은 시군단위조직, 광역단위조직, 도단위 연합회, 중앙단위 연합회 등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1. 시군단위 조직은 지역특화작목 및 수출(가능)작목 등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2. 광역단위 조직은 1개 시군에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가수가 적을 경우 다수 시군 또는 도단위로 조직할 수 있다.

3. 도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시군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4. 중앙단위 연합조직은 품목별 도단위 조직의 임원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.

② 단위연구모임의 회원수는 지역 및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
③ 연구모임은 자체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

1. 회칙에는 연구모임의 명칭, 목적, 사업, 회원, 임원, 회의, 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5조(활동)** 연구모임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.

① 연구모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간 분기별 1회 이상의 정례모임을 개최한다.

② 연구모임의 효율적인 육성에 필요한 리더쉽 및 기타 필요한 교육, 선진지 견학 등을 회원, 지도자 및 지도공무원(전문지도사,관리자)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.

③ 현장문제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(생산, 유통, 가공, 판매 등)에 관한 연구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.

④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자가 시장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한다.

⑤ 소비자단체,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.

⑥ 연구모임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다.

**제6조(연구모임육성위원회)**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장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련 지도공무원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둘 수 있다.
-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에서 연구모임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는 연구모임의 등록, 부서별 사업지원, 활동방향 심의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.

**제7조(운영지원)** ①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은 효율적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.

- ② 연구모임별 전담지도사(연구사) 1인 이상을 지정한다.
- ③ 각급단위 농촌지도기관의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을 연구모임 회원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다
- ④ 연구모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.

**제10조(평가)** ① 매년 연구모임을 비교 평가하여 우수 연구모임에 대하여는 시상하고 인센티브사업을 우선 지원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